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수정 1 차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2,394,602	9,071,838
일반회계	255,270,793	7,658,124
특별회계	47,123,809	1,413,714
공기업특별회계	12,908,177	387,24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908,177	387,245
기타특별회계	34,215,632	1,026,46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10,093	33,303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821,796	54,65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26,305	9,789
기반시설특별회계	457,000	13,710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59,000	10,770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714,600	21,438
주택사업특별회계	6,000	180
수질개선특별회계	29,420,838	882,625

제 2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지방채 발행) :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계속비사업) : "해당없음"

제 7 조 (지방세 지출보고서) : "해당없음"

제 8 조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392,108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예산의 이용) :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